

# 한국치위생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 03. 01 제정

2020. 01. 01 개정

2021. 04. 16 개정

2024. 05. 01 전면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치위생학회(이하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확립
2.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출판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제시
3.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제시
4.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시

##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치위생학회지(JKSDH)에 논문 투고(게재)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제반 연구행위에 참여하는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시행 2023.7.17.]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당한 인용이나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중 게재(증복 출판):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논문을 위한 연구에서 과학적·기술적 공헌 도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4조 (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 제5조 (연구대상자)

-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 은폐나 기회 박탈 등 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된 정보를 실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함)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문헌 고찰, 메타분석, 이차분석 등의 연구
  4.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 ③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젠더 의식)**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 연구에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에 아래 내용을 기술한다.

- ①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인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② 임상연구인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 제7조 (연구비)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 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 제3장 논문심사와 출판

#### 제8조 (출판윤리)

- ① 저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고 저자 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4.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 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 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② 저자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ICMJE, 2024, <https://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저자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저자의 자격기준은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으로 수정하고,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하여 승인하고,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한 자이다.
2. 저자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저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5. 인공지능(AI)을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9조 (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 ①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시키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한 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 ①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심사자는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정중하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 ⑤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회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학술발표)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4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1. 한국치위생학회지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출판과 관련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한국치위생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만일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에서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논문의 취소 및 인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
3. 편집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시에는 사안을 연구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과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 의뢰사항을 심의한다.

###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예비조사나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를 조사한다.
-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예비조사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4조 (조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회은 편집위원 및 관련 전문가(치위생학 이외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등으로 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보자(또는 증인 및 참고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조 (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기구는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 ③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과정
- ⑥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회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 ⑦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제16조 (본조사 후 연구부정행위 판정)**

- ① 판정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7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제1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예비조사 기구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 (설치)** 본 학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20조 (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연구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본 학회와 회원학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단,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 ③ 한국치위생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참고인으로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④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⑦ 위원장이 연구윤리위반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고, 본 학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2.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2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향후 해당 저자(들)의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6. 논문 저자에게 서면 경고
  - 7. 논문 저자의 회원 자격 정지
  - 8.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② 연구 및 출판윤리 부정행위를 한 회원과 논문은 후속조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제24조 (심의결과 처리)**

- ① 심의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후속 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② 심의결과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해당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방지)**

① 위원회는 회원들의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 규정을 안내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 **제6장 보칙**

**제27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 의편협 기준 및 교육부 지침(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28조 (세부지침)**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